

#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(안)

## 검토보고서

2018. 10. 23.  
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

1. 제 출 자: 성동구청장

### 2. 제안이유

- 금남시장 상인 및 이용객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시장 앞 도로나 주변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등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차장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으며, 이러한 이유로 전통시장 이용을 꺼려하고 있음.
- 침체된 전통시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주차장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금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은 중소기업청의 201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어 국·시·구비를 예산으로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
- “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(안)”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【사업명: 금남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】

가 취득구분: 토지·건물 취득

나. 위 치: 성동구 금호동3가 294번지 등 6필지

다. 취득재

- 토 지: 금호동3가 294 등 6필지  $666.6m^2$
- 건 물: 6개동 연면적  $996.14m^2$ , 지하1층/지상4층 등

라. 처분재산(철거)

- 건 물: 6개동 연면적  $996.14m^2$ , 지하1층/지상4층 등

마. 기준가격

- 토지: 3,659,968천 원(개별공시지가)
- 건물: 1,090,146천 원(개별주택공시가격)

바. 조성계획: 대상부지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 후 건물을 철거하고  
평면식 주차장(15면) 조성

사. 취득시기

- 토지 및 건물
  - 금호동3가 294 등 5필지: 2017년 12월
  - 금호동3가 308, 1필지: 2018년 10월(예정)

아. 주차장 조성 준공시기: 2019년 7월(예정)

#### 4.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 계상 재산

가. 주차장특별회계

- 취득 1건: 토지 6필지  $666.6m^2$ (금호동3가 294번지 등 6필지)  
건물 6동 연면적  $996.14m^2$
- 처분 1건: 건물 6동 연면적  $996.14m^2$

#### 5. 관련법규

- 가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- 나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- 다.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제13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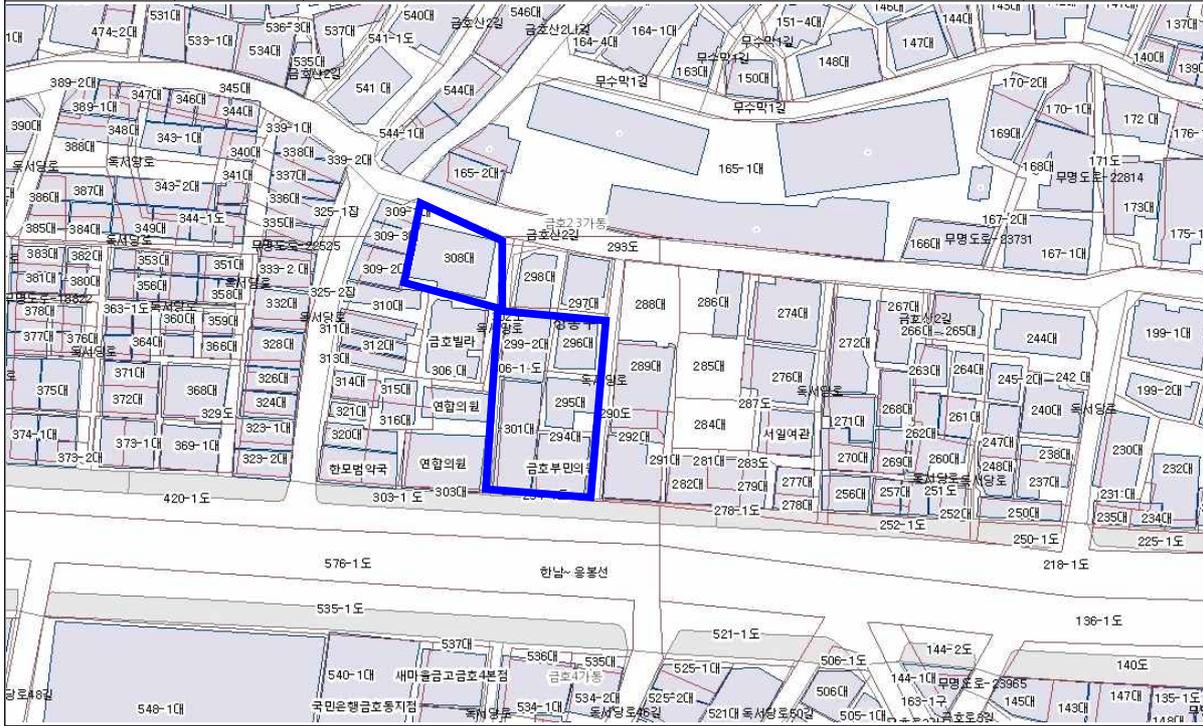




# 위치도 및 현황사진

【사업명: 금남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】

재산내역	소재지	서울특별시 금호동3가 294번지 등 6필지	소유자	성동구
	면적	토지 666.6㎡ / 건물 996.14㎡	지목	대



## 6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금남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한 것임.
- 세부내역을 살펴보면, 중소기업청(現 중소벤처기업부)의 2017년 전통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주차환경 개선사업 선정에 따라, 금호동3가 294등 6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 후 건물을 철거하고 평면식 주차장 15면을 조성코자 하는 것임.
- 금남시장은 건물 밀집 지역에 위치하여 시장 이용객 및 시장일대 상인과 주민들이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바, 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장 이용객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또한, 주차장 조성을 위해 필요한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,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에 따라 확보한 국시비 보조금 등의 적극적 집행으로 주차장 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, 사후 운영 관리에 대한 검토 또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임.
- 다만, 본 안건의 토지와 건물 일부는 2017년 12월 기 취득한 것으로,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 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법적 사무인 점을 고려, 추후에는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.